

[붙임1]

##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권역별 근무예정지역 현황

채용지역	근무 부서	주 소
서울	서울지역본부 지적사업처	·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3 7층
	국토정보교육원 교육기획실 (공간정보아카데미)	·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3 4층
부산	부산울산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	·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29 2층
인천	인천지역본부 지적사업처	·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51번길 42
경기남부	경기남부지역본부 지적사업처	·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0
경기북부	경기북부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	·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80
충북	충북지역본부 운영지원처	·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49
충남	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	·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30
전북	본사	·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
		·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63 5층, 6층
		·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2로 42
	전북지역본부 운영지원처	·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0
광주	광주전남지역본부 지적사업처	·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2
대구	대구경북지역본부 운영지원처	·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8
경남	경남지역본부 지적사업처	·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6
제주	제주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	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18

- \* 최종 배치되는 근무부서(지사)는 해당 지역 인력운영 현황 등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근무부서(지사)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\* 인턴 근무기간 동안 사택, 숙박비 등이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별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2]

##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가산점수 적용 비율 안내

대 상 별	10% 가점	5% 가점
독립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애국지사 본인</li> <li>· 순국선열 유족</li> <li>·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애국지사 가족</li> <li>·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</li> <li>·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</li> </ul>
국가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 본인</li> <li>·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의 가족</li> <li>·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·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</li> <li>·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</li> </ul>
5·18민주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</li> <li>·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</li> <li>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</li> <li>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·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</li> </ul>
특수임무수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</li> <li>·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</li> <li>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·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</li> </ul>
고엽제후유의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</li> </ul>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※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

**[붙임3]**

##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

	자격증 종류	가점	비고
<b>자격 가점</b>	지적기사, 정보처리기사, 토목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, 도시계획기사, 건축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한국사능력 1급	3	
	지적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토목산업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, 건축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스 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, 한국사능력 2급	2	
	지적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, 측량기능사, 컴퓨터활용능력 3급, 워드프로세스 2급, 전산회계운용사 2급, 한국사능력 3급	1	

\* 자격가점의 최고한도는 10점입니다.

\* 동일종류의 자격은 최상위 자격 하나만 가점으로 인정됩니다.

예) 한국사능력 2급과 3급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사능력 2급만 가점으로 인정